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조항 등 관련 안내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olleh tv 273번 t-broad 205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당 대표는 되고 야당 대표는 안된다”라는 최근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에 따라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며, 관련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규정

- 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후보자 등’이 아닌 정당(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당원 등)은 법 제88조에 따른 제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 다른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 차입에 관한 질의회답

- 우리 위원회는 정당 운영 및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보조금은 다른 정당에 대여할 수 없음.
- 이는 사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당이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다른 정당으로부터 유상 대여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한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